

보도	2026.7.1.(수) 조건	배포	2026.6.30.(화)	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보호운영팀	책임자	팀 장	박계주	(02-3145-5707)
		담당자	선 임	장경석	(02-3145-5710)
	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	책임자	부 장	홍양희	(02-2262-6665)
		담당자	팀 장	이현우	(02-2262-6594)
	손해보험협회 경영지원부	책임자	부 장	류종원	(02-3702-8571)
		담당자	팀 장	장준호	(02-3702-8576)

“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 관행이 개선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약관대출의 대출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해집니다.”

- 주요 내용 -

- 금융소비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은 대출정보를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, 동일한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는 경우
 - 최초 약관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 후 추가 약관대출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.
- 이에, 약관대출에 대한 대출정보 관리방식을 보험계약별에서 대출건별로 개선하여, 약관대출의 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.

I 개선배경

-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의 필요성, 조건 등을 다시 검토하여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
- 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의 범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,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**14일**입니다.

※ **참고 (보장성 상품)**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**15일**, 청약일로부터 **30일**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
(투자성 상품)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**7일 내**

- 약관대출*은 하나의 보험계약에 대하여, 여러 차례 대출 취급이 가능한데,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실행된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

*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

약관대출의 청약철회권 행사 불가 사례

일자	대출 및 청약철회	청약철회 행사	비고
7.1.	甲이 최초 약관대출 실행		
7.5.	甲이 <u>최초</u> 약관대출에 대한 청약철회	가능	7.1일 대출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내
8.1.	甲이 추가 약관대출 실행		
8.5.	甲이 <u>추가</u> 약관대출에 대한 청약철회	불가능	7.1일 대출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후

- 이는 대출정보를 대출계약별로 관리하는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약관대출의 대출정보를 보험계약별로 관리하는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.

II 개선내용 및 향후계획

- 7월 1일부터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보험계약 단위에서 약관대출 건별로 변경됩니다.

증권번호별 대출정보 관리방식 (기존 약관대출)				⇒	대출계약별 대출정보 관리방식 (변경된 약관대출, 일반적인 대출)			
대출 계약		집중건수	대출 계약		집중건수			
증권번호 A(1건)		1건	대출 계약		3건			
대출 1	10만원		대출 1	10만원				
대출 2	10만원		대출 2	10만원				
대출 잔액	20만원		대출 3	10만원				

※ 대출건수 증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및 CB사에 협조요청 완료

-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약관대출도 각 대출건별로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되어, 약관대출 건별로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.

※ '26.7.1일부터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부터 적용

- 아울러, 보험회사가 약관대출 취급 시 약관대출 이용고객에게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토록 할 예정입니다.

* (예시) 청약철회권 관련 보험회사 스크립트 및 모바일 앱에 안내 문구 추가 등

-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의 운영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고,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